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0. 2. 28.>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

1. 자가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1) 학과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항공법규	국제·국내항공법규	7.5	15
	조종 관련 항공법규	7.5	
공중항법	항법이론	15	45
	비행단계별 비행절차	15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	15	
항공기상	기상일반	15	30
	항공기상, 분석 및 실무	15	
비행이론	비행이론 일반	10	45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	15	
	기초비행원리	10	
	항공기 성능	10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교통관제업무 일반	15	40
	조난·비상·긴급통신 방법 및 절차	10	
	항공통신·항공정보	1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5	5
계			180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단독 비행시간 10시간을 포함한 총교육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과목	동승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	계
비행기	1. 장주 이착륙	7	3	10
	2. 공중 조작	7	2	9
	3. 기본계기비행	1	-	1
	4. 야외 비행	5	5	10
	5. 야간 비행	2	-	2
	6.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	1
	7.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2
계		25	10	35
회전익 항공기	1. 장주 이착륙	8	2	10
	2. 공중 조작	3	2	5
	3. 지표 부근에서의 조작	4	1	5
	4. 야외 비행	5	5	10

5. 비정상 및 비상절차	3	-	3
6.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2
계	25	10	35

단,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항공기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항공법규, 인적수행능력,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과목의 학과교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정비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비행이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항공교통·통신·정보 업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정비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5.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수행능력 과정을 이수한 사람(항공우주의료 관련 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교육(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 포함)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다만,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비행실기교관 중 25% 이상은 계기비행증명을 가질 것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나) 부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다)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라)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

나) 운영기준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비행실기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8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모의비행장치 실기시험 포함)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서 4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1,0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을 것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은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3) 모의비행훈련장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지정되고 유지·관리할 것
- 4)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 5) 비행실기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일 것. 다만, 비행실기교육을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기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 3)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1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1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사.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할 것

2.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510시간(자가용 조종사과정 교육시간을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항공법규	국제·국내항공법규	45	90
	조종 관련 항공법규	45	
공중항법	항법이론	30	105
	비행단계별 비행절차	30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	45	
항공기상	기상일반	15	90
	항공기상	30	
	항공기상분석 및 실무	45	
비행이론	비행이론 일반	10	115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	45	
	기초비행원리	30	
	항공기 성능	30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교통관제업무 일반	30	90
	조난·비상·긴급통신 방법 및 절차	15	
	항공통신	30	
	항공정보	15	
시험(중간시험을 네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20	20
계			510

※ 비고 : 총 교육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 70시간을 포함한 총교육시간은 1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과목	동승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	계
비행기	1. 장주 이착륙	15	20	35
	2. 공중 조작	10	15	25
	3. 기본계기비행	10	10	20
	4. 야외 비행	34	20	54
	5. 야간 비행	5	5	10
	6.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	1
	7. 시험(중간시험을 세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	5
	계	80	70	150
헬리콥터	1. 장주 이착륙	15	5	20
	2. 공중 조작	3	3	6
	3. 지표 부근에서의 조작	5	2	7
	4. 기본계기비행	5	5	10
	6. 야외 비행	15	10	25
	5. 야간 비행	2	5	7
	7. 비정상 및 비상절차	15	5	20
	8. 시험(중간시험을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	5
	계	65	35	100

단,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항공기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항공법규, 인적수행능력,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과목의 학과교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정비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

	년 이상인 사람
3. 비행이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항공교통·통신·정보 업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정비사를 제외한다)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5.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수행능력 과정을 이수한 사람(항공우주의료 관련 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의 실기교육(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 포함)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다만,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을 가진 비행실기교관 중 100분의 75 이상은 계기비행증명 또는 군의 계기비행증명을 가질 것
 -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다)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

나) 운영기준

-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비행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 (1) 23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모의비행장치 실기시험 포함)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서 5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1,5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을 것
 -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3) 모의비행훈련장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지정되고 유지·관리할 것
- 4) 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 5) 비행실기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일 것. 다만, 비행실기교육을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5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기시험은 4회 이상 실시할 것
- 3)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2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2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사.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할 것

3. 부조종사(MPL: Multi-crew Pilot Licence) 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6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 교육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를 이용한 교육시간은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과목	교육시간
1. 항공법규	18
2.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수색 및 구조 포함)	40
3. 전파법규 및 전기통신술	10
4. 무선공학(항공보안무선시설 및 무선기기)	27
5. 항공기상	77
6. 공중항법	68
7. 항공계기	20
8. 운항관리(비행계획 포함)	10
9. 항공역학(비행이론, 감항검사 포함)	40
10. 항공기구조	20
11. 항공장비	30

12. 동력장치	30
13. 정비방식, 중량배분, 중심위치, 항공기 성능	30
14. 항공기 조종법	30
15. 항공기 취급법	10
16. 인적 성능 및 한계(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	20
17. 특정 형식의 항공기 비행교범(구조, 동력장치, 장비, 성능, 운용 제한 및 중량배분 등 포함)	116
18. 특정 형식의 항공기 조종실 절차훈련(CPT: Cockpit Procedure Training)	20
19. 항공사 운영(항공역사, 운송항공회사, 항공경제, ICAO와 IATA의 역할 포함)	10
20. 시험(중간시험을 여덟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4
계	650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특정 형식의 항공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 시간과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경력을 포함하여 총 2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목	동승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	계
1. 항공기 비행 전 지상작동	10	3	13
2. 항공기 이륙	30	12	42
3. 항공기 상승비행	25	10	35
4. 항공기 순항비행	15	10	25
5. 항공기 강하비행	15	10	25
6. 항공기 접근비행	25	10	35
7. 항공기 착륙	30	12	42
8. 항공기 비행 후 지상작동	10	3	13
9. 시험(중간시험을 여덟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0	-	10
계	170	70	240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항공기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소지해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	--------

1. 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 항공기상, 운항관리 등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중 1개
2. 전파법규, 전기통신술, 무선공학 등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해당 과목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증명 중 1개
3. 항공계기,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장비, 동력장치, 정비방식, 중량배분 중심위치, 항공기 성능, 항공기 취급법 등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중 1개
4. 인적 성능 및 한계 중 항공생리·심리 및 구급법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사 중 1개

나) 운영기준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교육(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 포함)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다만,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을 가진 비행실기교관 중 100분의 75 이상은 계기비행증명 또는 군의 계기비행증명을 가질 것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

나) 운영기준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 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비행실기교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 (1) 23세 이상일 것
- (2) 실기시험관은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모의비행장치 실기시험 포함)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5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1,500시간 이상의 총비행경력이 있을 것
 -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은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3) 모의비행훈련장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지정되고 유지·관리할 것
- 4)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 5) 비행실기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일 것. 다만, 비행실기교육을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라. 교육평가방법

- 1) 교육과정 중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은 각각 9회 이상 실시할 것
- 2)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3) 학과시험 범위는 제3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4) 실기시험 범위는 제3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6)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사.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할 것

4. 조종사 등급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목	교육시간
1. 항공기 일반(다발항공기의 구조, 동력장치, 장비, 성능, 운용제한 및 중량 배분 등 포함)	10
2. 항공기 조종법	9
3. 시험	1
계	20

-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과목	동승비행시간
1. 장주 이착륙	2
2. 공중 조작	3

3. 기본계기비행	2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5. 시험	1
계	10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항공기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질 것. 단 항공기 일반 과목의 학과교관은 해당 종류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도 가능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의 실기교육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및 조종교육증명
 -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다)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나) 운영기준

-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비행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4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1,000시간 이상의 총비행경력이 있을 것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3)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4) 비행실기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일 것. 다만, 비행실기교육을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라. 교육평가방법

1) 교육과정 중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은 각각 한 번 이상 실시할 것

2) 교육생은 총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3) 학과시험 범위는 제4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4) 실기시험 범위는 제4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5)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6)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5. 조종사 형식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140시간 이상이거나 항공기 제작회사가 정한 형식한정 변경에 필요한 학과교육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 교육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를 이용한 교육시간은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과목	교육시간
1.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구조, 동력장치, 장비, 성능, 운용제한 및 중량배분 등 포함)	116
2. 해당 항공기 조종실 절차훈련(CPT, Cockpit Procedure Training)	20
3. 시험(중간시험을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계	140

- (2) 실기교육: 과목별 배분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구분	과목	동승비행시간	
		제트발동기	왕복발동기
비행기	1. 모의비행훈련	20	16
	2. 항공기 실제비행훈련	2	2
	3.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2	2

	한다)		
	계	24	20
헬리 콥터	1. 항공기 실제비행훈련	20	
	2.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계	22	

※비 고

1. 항공기 제작회사가 정한 형식 한정 변경에 필요한 실기교육시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훈련규정에서 정한 실기교육시간 이상으로 운영 가능
 2. 헬리콥터의 경우 다른 헬리콥터에 대한 형식 한정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항공기 실제비행훈련 동승비행시간은 10시간 이상
-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질 것. 단 항공기 비행교범 과목의 학과교관은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비경력이 있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도 가능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기의 형식 한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져야 한다.
 -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비행기에 대해서만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및 조종교육증명
 -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다)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비행기에 대해서만 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나) 운영기준

-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

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비행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5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해당 형식의 항공기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하여 1,500시간 이상의 총비행경력이 있을 것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3)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4) 비행실기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 지정을 받은 자일 것. 다만, 비행실기교육을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기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 3)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5호 가목 1)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5호 가목 2)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6. 계기비행증명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7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계기비행	항공법규(계기비행 등에 관한 사항)	8	68

	운항일반	15	
	계기비행 및 비상절차	30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1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2
계			70

※ 비교 : 총 교육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CBT (Computer Based Training)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실기교육: 과목별 배분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과목별 비행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목	동승 비행시간
1. 기본계기비행(정상, 비정상 및 비상상태 회복절차 등 포함)	10
2. 계기비행(계기이륙, 표준계기 출발 및 도착, 항공로 비행, 체공, 접근 및 착륙 등 포함)	18
3. 야외 계기비행	10
4.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계	40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시간은 20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0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기 종류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항공법규, 운항일반, 항공교통관제시스템 과목의 학과교관은 제외한다)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법규, 운항일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운영기준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비행실기교관은 해당 과정에 맞는 다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및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실기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나) 운영기준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비행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5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해당 종류의 항공기 계기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하여 1,500시간 이상의 총비행경력이 있을 것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3)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라. 교육평가방법

- 1) 교육과정 중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은 각각 2회 이상 실시할 것
- 2)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3) 학과시험 범위는 제6호가목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4) 실기시험 범위는 제6호가목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6)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7. 조종교육증명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13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 교육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를 이용한 교육시간은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과목	교육시간
1. 항공법규(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 포함)	10
2. 사업용 조종사에 필요한 학과교육의 복습	40
3. 교육심리학(학습진도, 인간의 행동,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수과정, 교육방법, 비평, 평가, 교육보조자료의 이용 등을 포함)	50
4. 교육방법(비행교육기술, 교육계획 등을 포함)	20
5. 비행안전이론	5
6.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	5
7.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5
계	135

- 2) 실기교육: 실기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 목	동승 비행시간
1. 비행 전후 점검	1
2. 공중조작(해당 항공기에 대한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 실기교육에 필요한 과목)	2
3. 지상참조 비행	2
4. 장주비행	2
5. 야간비행	2
6. 야외 비행(계기비행 포함)	2
7.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8.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계	15

※ 비교: 조종교육증명 과정 수료 시 교육생의 총비행시간은 2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관 확보기준

-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기 종류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항공법규, 교육심리학, 인적수행능력 과목의 학과교관은 제외한다)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교육심리학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관리 포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수행능력 과정을 이수한 사람(항공우주의료 관련 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에 맞는 다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것
 -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나) 운영기준

-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비행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아래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50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경력과 해당 종류의 항공기 계기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하여 1,500시간 이상의 총비행경력이 있을 것

(가) 사업용 조종사(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선임 조종교육증명

(다) 군의 비행평가교관 자격(군의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3)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라. 교육평가방법

1) 학과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할 것

2) 실기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3) 교육생은 총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7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7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8. 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3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항공법규	국제·국내항공법	22.5	45
	항공교통관제 관련 항공법규	22.5	
관제일반	관제일반	15	75
	항공로관제절차	15	
	접근관제절차	15	
	공항교통관제	15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	15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15	45
	항공지도	15	
	공중항법	15	
항공기상	기상일반	15	45
	항공기상	15	
	항공기상분석 및 실무	15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교통관제업무 일반	15	60
	조난·비상·긴급통신 방법 및 절차	15	
	항공통신	15	
	항공정보	15	
항공관제영어	항공관제영어(발음법 포함)	68	68
시험	시험(중간시험을 세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7
계			345

2) 실기교육: 실기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목	교육시간
1. 항공교통관제 실기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모의관제장비에 의한 교육도 포함한다)	176
2. 시험(중간시험은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계	180

※ 비고

1. 항공교통관제 실기교육은 비행장관제 실기교육을 100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관제, IFR 비행장관제 또는 접근관제 실기교육을 해야 한다.
2. 실기교육은 지역관제소 또는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비행장의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에서 할 수 있다.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인적수행능력,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항공관제영어 과목의 학과교관은 제외한다)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항행안전시설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군의 항공교통관제 교관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1개
3. 항공기상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의 항공교통관제 교관자격,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의 항공교통관제 교관자격,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5. 항공관제영어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의 항공교통관제 교관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과목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6.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수행능력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운영기준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관제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2) 관제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군의 항공교통관제 실기 교관자격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

나) 운영기준

- (1) 관제실기교관의 교육시간은 1주당 2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관제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 가) 24세 이상일 것
-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관제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 가) 자격요건
 - (1) 23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군의 항공교통관제 실기평가교관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관제실기교육 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실무경력을 가질 것
 -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관제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관제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1) 강의실, 어학실습실, 자료열람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관제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실제 관제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관은 관제실기교육에 사용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모의관제장비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갖출 것. 단, 비행장관제를 실습할 수 있는 수동식 또는 자동식 모의비행장관제장비 중 하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가) 모의비행장관제장비

- (1) 수동식 모의비행장관제장비
 - (가) 건물과 비행장 모형을 대형 탁자에 설치해 놓고 보조요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모형항공기를 이동시키며, 조종사처럼 무선통신을 할 수 있을 것

(나) 모형관제탑에서는 그 모형비행장과 모형항공기를 보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관제탑 콘솔에는 전시판, 무선전화기 마이크, 헤드폰, 5회선의 전화, 풍향풍속계 등을 갖추는 것

(라) 관제탑에서 사용되는 업무일지·지도·절차도를 갖추는 것

(2) 자동식 모의비행장관제장비

(가) 모형관제탑 내 관제사의 전면부에 위치한 스크린에 비행장과 비행장 주위의 항공기 이동상황을 컴퓨터로 전시하고, 보조요원이 그 상황을 조절하면서 조종사처럼 무선통신을 할 수 있을 것

(나) 모형관제탑에서는 스크린에 전시되는 모형비행장과 모형항공기를 보면서 교육할 수 있을 것

(다) 모형관제탑 콘솔에는 전시판, 무선전화기 마이크, 헤드폰, 5회선의 전화, 풍향풍속계 등을 갖추는 것

(라) 관제탑에서 사용되는 업무일지·지도·절차도를 갖추는 것

나) 다음과 같은 모의접근관제장비를 갖추는 것

(1) 학생 및 보조요원이 사용할 긴 콘솔이 있고, 그 위에 비행진행판 또는 전시판을 갖추어야 하며, 레이더접근관제·정밀접근관제 교육용으로는 실물 레이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식모의관제장비를 갖추는 것

(2) 항공기 역할을 하는 보조요원 2명이 다른 방 또는 동일한 실내의 다른 쪽에 위치해 있고, 지역관제소·관제탑·소방·기상실·항공사 등과의 전화통신을 담당하는 보조요원 1명이 있을 것 이 경우 학생이 보조요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전화와 무선통신용 장비를 각각 갖추는 것

(4) 접근관제소에서 사용되는 업무일지·지도·절차도를 갖추는 것

다) 다음과 같은 모의항로관제장비를 갖추는 것

(1) 지역관제소의 각 섹터별로 콘솔에 비행진행판 또는 전시판을 갖추어야 하며, 레이더항로관제 교육용으로는 실물 레이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식 모의관제장비를 갖추는 것

(2) 각 섹터별로 공지통신 및 지점 간 통신(5회선 이상)을 위한 통상적인 통신시설을 갖추는 것

(3) 항공기 역할을 하는 보조요원 2명이 다른 방 또는 동일한 실내의 다른 쪽에 위치해 있고, 접근관제소·관제탑·기상실·통신실·항공사 등과의 전화통신을 담당하는 보조요원 1명이 있을 것

(4) 지역관제소에서 사용되는 업무일지·지도·절차도를 갖추는 것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4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기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할 것
- 3) 교육생은 총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8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8호 가목 2) 실기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9.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 교육시간은 2,4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학과시간	실기시간	계
항공법규	국제항공법(ICAO와 IATA에 관한 내용 포함)	45	-	45
	국내항공법(사고조사 및 항공보안 포함)			
	항공정비관리(정비관련 규정, 도서, 정비조직, 정비프로그램, 정비방식 및 양식기록에	45	-	45

	가스터빈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45
	가스터빈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45
	가스터빈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45
	가스터빈엔진 장착, 탈착 및 교환	20	25	45
	가스터빈엔진 정비 및 작동(화재방지계통 포함)	10	20	30
	중간시험(2회 이상)	5	5	10
	소계	285	355	640
전기·전자·계기	기초전기·전자	120	75	195
	항공기 전기계통	60	30	90
	항공기 계기계통	60	30	90
	항공기 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치	120	60	180
	중간시험(2회 이상)	5	10	15
	소계	365	205	570
최종시험	종합평가 시험	5	10	15
계		1,310	1,100	2,410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항공법규, 기초전기, 인적성능 및 한계, 수학·물리·일반기계 과목의 학과교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장비(전기, 계기, 전자, 무선통신, 레이더 및 항법장비 등)	항공정비사 또는 해당 과목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항공전자(전기, 계기 포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인적 성능 및 한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성능 및 한계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수학, 물리, 일반기계	해당 과목에 대한 학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정비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다)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정비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의 항공정비사 실기교관자격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나) 운영기준

(1) 정비실기교관의 교육시간은 1주당 2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2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정비실기 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기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군의 항공정비사 실기평가교관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정비 실기교육 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항공정비사로서의 실무경력을 가질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정비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정비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정비실습실, 자료열람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정비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

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정비실기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비 및 공구
1. 기초금속 가공실기	가. 장비 1) 동력 그라인더 2) 동력 드릴링머신 3) 바이스(Vise) 12개 이상 및 작업대 3대 이상 4) 형상 가공장비 5) 금속 절단용 동력 쇠톱 나. 측정 및 금 굿기 개인용 공구 1) 스틸자 2) 삼각자 3) 필러 게이지 세트 4) 디바이더(Divider) 세트 5)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내·외경 측정) 6) 마이크로미터(내·외경 측정) 다. 조립용 공구 1) 일반공구 세트 2) 사이드 커터 플라이어 3) 핸드 드릴과 소형 다이아 미터 드릴 세트 4) 해머 세트(볼핀, 동, 라바, 피혁, 플라스틱, 크로스형)
2. 용접실기	가. 산소-아세틸렌 용접장비 세트 나. 전기 아크 용접기 1대 다. 용접 보호장구(눈 및 얼굴 가리개, 보안경, 가죽 장갑 및 앞치마) 라. 점 용접용 전기저항 용접기 1대
3. 판금실기	가. 장비 1) 절단기 1대 2) 그라인더 1대 3) 판재 접기 장치(Cornice brake) 4) 핸드 바이스(Hand Vise) 1개 5) 형상 롤러(Forming Roll) 1대 6) 정밀드릴링머신(Sensitive Drilling Machine) 1대 7)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 나. 공구 1) 판금(Plate) 게이지 1개 2) 판금 공구 세트 3) 쇠톱 4) 줄 세트 5) 센터 및 핀 펀치 세트 6) 평면 정과 여러 단면의 정 세트 7) 복합소재 수리 공구
4. 발동기 실기	가. 장비 1) 왕복발동기 1대 이상 2) 가스-터빈 발동기 5대 이상 3) 시운전이 가능한 발동기 또는 작동모습을 시현할 수 있는 발

	<p>동기 1대 이상</p> <p>4) 발동기 분해 시 부품 보관용 스탠드</p> <p>5) 부품 세척용 장비</p> <p>6) 이동용 호이스트(Hoist)</p> <p>7) 발동기 슬링</p> <p>8) 발동기 분해 및 조립용 공구 세트</p> <p>9) 비파괴검사용 장비(초음파검사, 형광침투검사, 와전류검사, 자분탐상검사)</p> <p>10) 내시경검사 장비</p> <p>나. 공구</p> <p>1) 일반 공구 세트</p> <p>2) 토크 렌치(Torque Wrench)</p> <p>3) 스트랩 렌치(Strap Wrench)</p>
5. 항공기체 실기	<p>가. 헬리콥터, 비행기를 포함한 항공기 3대(가동 할 수 있거나 정비 가능할 것) 이상</p> <p>나. 유압식 리프트 잭, 리프트 슬링 등 작업대</p> <p>다. 기술도서(圖書) 비치용 책상 및 진열대</p> <p>라. 작업용 운반차</p> <p>마. 소화장비(CO₂ 소화기 등)</p> <p>바. 작업대, 초크 등 격납고용 비품</p> <p>사. 이동용 소형 크레인</p> <p>아. 타이어 수리용 장비</p> <p>자. 오일 및 연료 보충용 장비</p> <p>차. 케이블 스웨이징(Swaging) 장비</p> <p>카. 이동용 유압식 실험 트롤리(Trolley)</p> <p>타. 일반 공구 세트</p>
6. 항공기 계통실기	<p>가. 유압계통 부품</p> <p>나. 착륙장치계통 부품</p> <p>다. 공압계통 부품</p> <p>라. 비행조종장치 부품</p> <p>마. 객실 공기조절장치 부품</p> <p>바. 산소계통 부품</p> <p>자. 제빙계통 부품</p> <p>차. 비상장치, 방빙장치 등의 다양한 부품</p>
7. 항공전기· 전자·계기 실기	<p>가. 특수공구 및 측정기기</p> <p>1) 전기 납땀인두 12세트 이상</p> <p>2) 전선 스트리퍼 1개 이상</p> <p>3) 전기·전자·계기용 공구 1세트 이상</p> <p>4) 크림핑(Crimping) 공구 1세트 이상</p> <p>5) 멀티미터 1세트 이상</p> <p>6)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1세트 이상</p> <p>7) 메가 옴(Mega Ohm) 미터 1세트 이상</p> <p>8) 배터리 충전장치</p> <p>9) 직류(5 - 28 volt DC)·교류 전원공급 장치</p> <p>10) 전원공급장치</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신호발생기(실기 교육용 포함) 12) 교류 전압계 13) 변압기 나. 소요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기교육용 항공기 케이블 2) 항공기 플러그, 리셉터클(Receptacle) 등 3) 항공기 램프(직류 및 교류용) 다. 시험 또는 훈련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력계기 시험용 장비 2) 고도계기 시험용 장비 3) 공기누설 점검용 장비(모형장비를 포함한다) 4) 컴퍼스 교정 모의장치 5) 간단한 형태의 자동조종장치 6) 항공전자 작동 모의장치 라. 탑재장비 및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니폴드 압력 게이지 2) 유압 게이지 3) 발동기 오일 압력 게이지 4) 속도계기 5) 피토(Pitot) 정압 헤드 6) 고도계 7) 상승계 8) 선회경사지시계 9) 방향 자이로스코프(Gyroscope) 10) 인공수평계 11) 발동기회전계기 12) 발동기온도계기 13) 발동기 배기가스 온도계기 14) 연료량계기 15) 송신기(Transmitter) 16) 초단파·고주파 송수신기 17) 계기착륙장치[착륙경로수신기, 마커(Marker)수신기] 18) 장거리 항법 장비(GPS, IRs) 19) 탑재항법장비 20) 무선고도계기 21) 항공기 마그네토(Magneto) 및 점화용 전선 22) 직류 발전기 또는 교류 발전기 23) 전압 조정기 및 전류제한 장치 24) 시동기(Starter Motor) |
|---|

	25) 정지형 인버터(Static Inverter)
8. 삭제 <2018. 3. 23.>	
9. 삭제 <2018. 3. 23.>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9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것
- 2) 실기시험은 8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것
- 3)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것
- 4) 학과시험은 제9호가목에 따른 과목별로 실시한다.
- 5) 실기시험은 제9호가목에 따른 과목별로 실시한다.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10.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총교육시간은 20시간 이

상이어야 한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10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공중항법 포함한다)	3
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계	20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자기의 책임 하에 비행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시간을 포함한 총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과목	동승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	교육시간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 이동형비행 기, 동력패러 슈트	1. 장주 이륙·착륙	7	3	10
	2. 공중 조작	4	2	6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4.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2
	계	15	5	20
회전익경량 항공기	1. 장주 이륙·착륙	3	2	5
	2. 공중 조작	3	2	5
	3. 지표 부근에서의 조작	4	1	5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3	-	3
	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2
	계	15	5	20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0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경량항공기 종류에 해당하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질 것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

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0세 이상일 것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가질 것

나) 운영기준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비행실기교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8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1명을 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3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경량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인증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3)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평가방법

- 1) 교육과정 중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은 각각 2회 이상 실시할 것
- 2) 학과시험 범위는 제1호 가목 (1) 학과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3) 실기시험 범위는 제1호 가목 (2) 실기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4)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5)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11. 삭제 <2018. 3. 23.>